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64호)

2025. 2.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5
1. 결의안의 제안취지	5
2. 결의안의 발의배경	5
3. 결의안에 대한 검토	8
1) 결의안의 주요 내용	8
2) 자위권에 대한 검토	8
3) 우리나라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배경	9
4)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 확장억제 강화 및 핵협의그룹 출범	11
5) 종합 의견	12
[참고 1]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4
[참고 2]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15
[참고 3] 워싱턴 선언	20

I. 제안 및 회부

가.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12인

나. 제안일자 : 2024년 11월 12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3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1991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관한 선언’을 발표한 이후 지속됐던 ‘남북한 핵의 진공상태’는 사실상 33년 만에 종결되고, 북한에 의한 ‘핵 독점 시대’가 현실화되었다.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후 NPT 가입 국가로서 핵의 비확산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함은 물론, 북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핵의 포기를 요구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 9월 3일까지 6차에 걸쳐 핵실험을 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직후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바 있다. 최근에도 북한은 미 대선을 전후해 제7차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라는 우리 정보당국의 국회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10월 31일에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할 수도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하는 등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월,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평양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상호 군사원조’ 조항을 복원하고 러시아도 북한에 병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향후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명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침략전쟁에 러시아도 가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러·북 군사협력이 동북아 안정뿐 아니라 국제평화에도 커다란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 독점 상황에 보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위권 차원의 독자적인 핵무장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또다시 제7차 핵실험 또는 ICBM 발사 등의 위협적인 핵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차원의 자체 핵무장을 할 것임을 대한민국 정부가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핵무장으로서(자위권적 핵무장), ▲대한민국이 핵 경쟁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원해서 하는 핵무장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핵무장이며(전략적 핵무장),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대한민국도 그 즉시 핵무장을 해제하는 평화를 지향하는(평화적 핵무장)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는 〈조건부 핵무장 선언〉임을 함께 천명하여야 한다.

제안이유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 9월 3일까지 6차에 걸쳐 핵실험을 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직후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바 있다. 최근에도 북한은 미 대선을 전후해 제7차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라는 우리 정보당국의 국회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10월 31일에는 미 본토 타격

이 가능할 수도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에 성공하는 등 끊임없는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

이는 1991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관한 선언’을 발표한 이후 지속됐던 ‘남북한 핵의 진공상태’가 실질적으로 종결되었고, 북핵으로 인해 군사력의 비대칭성이 커지면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 실질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우려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실효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앞으로 7차 핵실험 또는 ICBM 발사 등의 핵 무력도발을 계속 이어갈 경우, 한반도 안보의 위기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자위권적 차원의 핵무장 선언을 통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바 동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결의안의 제안취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 강화로 동북아의 안보 위협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또는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자위권 차원의 자체 핵무장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2. 결의안의 발의배경

북한은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2017년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고, ICBM(화성-15형)¹⁾ 발사 후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였으며, 최근에도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²⁾되었고, 2024년 10월 31일에는 미본토 타격이 가능한 신형 ICBM(화성-19형)을 발사³⁾하는 등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

1) 북한이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을 넘나들며 탄도 궤도를 따라 비행하는 미사일)로, 2017년 11월 29일 시험 발사되며 공식적으로 확인됨. 북한은 이 미사일 시험 후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사실상 최종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군사적·정치적 선언이었음. 북한은 화성-15형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함.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최대 사거리가 약 13,000km 이상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2) ‘국정원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미국 대선 이후 될 수도”’, KBS뉴스, 2024.9.26.

3) ‘北, “최신형 화성-19형 시험발사 성공…최종완결판 ICBM”’, 조선일보, 2024. 11. 1.

<북한의 핵개발 주요일지>

일자	주요 내용
1985.12.12.	핵비확산조약(NPT) 가입
1991.12.31.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1993.3.12.	NPT 탈퇴 선언
1994.10.21.	미북간 「제네바 합의」 체결
1994.11.1.	핵 활동 동결 선언
1995.3.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2002.12.12.	핵 동결 해제 발표
2005.2.10.	핵무기 제조·보유 공식 선언(외무성 성명)
2005.9.19.	6자회담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등 '9.19 공동성명' 채택
2006.10.9.	제1차 핵실험 실시
2007.2.13.	6자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등에 대한 「2.13 합의」
2007.10.3.	6자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 등 「10.3 합의」
2009.5.25.	제2차 핵실험 실시
2013.2.12.	제3차 핵실험 실시
2013.3.31.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 채택
2013.4.2.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발표
2016.1.6.	제4차 핵실험 실시
2016.9.9.	제5차 핵실험 실시
2017.9.3.	제6차 핵실험 실시
2017.11.29.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2022.9.8.	핵무력 정책법 제정,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 지위 공표
2023.9.26.-27.	핵무력 강화 방침 규정 헌법 개정

※ 출처 : 「2024 북한 이해」,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발간, p.117.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유지되어 온 ‘남북한 핵의 진공상태’는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과 도발로 사실상 종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재 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온 대한민국은 군사력 비대칭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또한, 2024년 6월 북한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군사원조’ 조항을 복원하며 러시아의 북한 내 병력 파견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이는 러시아의 동북아 군사 개입의 명분이 될 수 있으며, 북한의 군사 도발이 국제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이 실질적 위협에 직면하였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임. 이에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또는 추가 ICBM 발사를 감행할 경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유지 및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대한민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을 선언할 필요성이 제기됨.

3. 결의안에 대한 검토

1) 결의안의 주요 내용

동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선언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총 2개의 주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결의안의 주요내용>

주 문	주요내용
안 제1호 (핵무장 필요성)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또는 ICBM 발사 등 추가 도발 시, 정부가 자위권 차원의 자체 핵무장을 선언할 것을 촉구
안 제2호 (핵무장 원칙)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자위권적 · 전략적 · 평화적 핵무장'의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며,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즉시 해제하는 '조건부 핵무장 선언'임을 천명

2) 자위권에 대한 검토

자위권(Self-Defense)은 국가가 외부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자국의 주권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이는 국제법상 기본적인 주권 행사로 인정되며,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함.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유엔 헌장(UN Charter) 제51조⁴⁾ 및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⁵⁾ 등이 있음. 이에 따라 개별국가들은 NATO

4)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1986년 니카라과 사건(Nicaragua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ICJ는 자위권 행사는 “즉각적이며, 필요하고, 비례적인 대응”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북대서양조약기구), 한미동맹 같은 군사동맹을 맺거나 방위조약 등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⁶⁾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한 국가가 공격받을 경우 동맹국이 함께 방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

이러한 자위권의 적용 범위는 ① 군대를 동원한 방어, 미사일 요격, 사이버 공격 대응 등 직접적인 군사적 방어 조치, ② 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동맹국의 핵우산⁷⁾을 통해 방어력을 확보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③ 경제·외교적 조치를 통한 비군사적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자위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노력은 국가의 주권과 생존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됨.

3) 우리나라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배경

대한민국은 1975년 4월 23일 핵확산금지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⁸⁾에 가입한바,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에서 핵 비확산 체제에 동참하고자 하는

6)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다른 국가가 함께 대응하는 권리임.

7) 핵우산(Nuclear Umbrella) 정책이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일환으로 핵보유국이 동맹국에게 핵 공격이 발생할 경우, 자국의 핵전력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보장하는 개념임. 이는 비핵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핵보유국의 핵 능력에 의존하는 형태로, 대표적인 집단안보 전략 중 하나임. 미국은 자국의 핵 전략을 동맹국에도 적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임.

핵우산 제공국	핵우산 대상국
미국	NATO 회원국, 한국, 일본, 호주 등
러시아	벨라루스, 일부 구소련 국가

8) 1968년 체결된 NPT는 1970년 발효되었으며,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중심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핵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음.

결단이었음.

한편, 1970년대 초반, 당시 박정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미군 철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핵무장을 검토한 바 있음⁹⁾. 1970년대 중반, 프랑스와 캐나다로부터 원자로 및 핵 관련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미국의 강한 반대로 한국은 NPT 가입을 조건으로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군사적 지원을 재확인받게 됨.

또한, 1970년대 한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 원자력 협력이 필수적이었으며, 핵 비확산 체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핵 관련 기술과 원자력 발전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음. 이에 NPT 가입을 통해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협력과 감시를 받으며 평화적 원자력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즉, 대한민국의 NPT 가입은 미국의 압력,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국제 사회의 핵 비확산 요구, 경제적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음. 이후 한국은 NPT 체제 내에서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9) 「박정희 정부의 NPT 가입 요인 분석」, 주경민,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석사 학위논문, P.67.

4)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 확장억제 강화 및 핵협의그룹 출범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 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대응하여 2023년 4월 26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회담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워싱턴 선언’을 발표¹⁰⁾하였음.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국 정상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이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별도의 문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특히, 한국은 확장억제에 대한 더 높은 관여¹¹⁾를 통해 그 효용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요한 조치로 ‘핵협의그룹(NCG)’의 설립이 합의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2023년 7월 출범한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미 한반도 핵 억제·핵 작전 지침」을 마련하고, 유사시 핵 협의절차, 한·미 핵·재래식 전력의 통합(CNI) 등 분야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있음.

10) 대한민국 대통령실 보도자료, ‘워싱턴 선언’, 2023.4.27.

11) 양국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로서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설립할 것을 합의하였음. (‘한미 핵확장억제 전략 강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전망’, 「이슈와 논점」 제210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6. 26).

5) 종합 의견

대한민국은 NPT 가입 이후 NPT 체제 하에서 핵비확산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가운데, 핵군축에서의 실질적 진전, 국제 핵비확산 체제 강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등 NPT 3대 축¹²⁾ 모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왔음.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7년 이래 매 NPT 평가회의 프로세스 회의에서 프랑스와 공동으로 북핵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부대행사 개최 등 다양한 외교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음.

동 결의안은 한반도 안보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며, 국가의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핵무장을 인정하려는 주장인바, 핵무장은 그 자체로 국제 안보와 지역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한반도와 같은 고도의 긴장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할 우려가 큼.

결의안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그 즉시 핵무장을 해제하는 등의 조건을 포함시킨 것 또한 이러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자위권적 핵무장은 NPT 및 NPT 체제를 약화시키며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확산을 부추기는 등 글로벌 안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2) NPT 3대 축은 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으로 구성됨.

따라서 자위권적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확장억제 전략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동 결의안에 대해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확장억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확장억제는 그간 지속되어 온 미국의 對韓 안보 공약의 근간이자, 한미가 공동으로 직면한 북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법임을 강조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270

참고 1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 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 출처 :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홈페이지(dialogue.unikorea.go.kr) > 남북합의서 참조

참고 2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본 조약을 체결하는 국가들(이하 “조약당사국“이라 칭한다)은,

핵전쟁이 모든 인류에게 엄습하게 되는 참해와 그러한 전쟁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제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연적 필요성을 고려하고,

핵무기의 확산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심각하게 증대할 것임을 확신하며,

핵무기의 광범한 분산방지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요구하는 국제연합총회의 제결의에 의거하며,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데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어떠한 전략적 장소에서의 기재 및 기타 기술의 사용에 의한 선원물질 및 특수분열성 물질의 이동에 대한 효과적 안전조치 적용 원칙을,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제도의 테두리내에서, 적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기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핵폭발 장치의 개발로부터 핵무기 보유국이 인출하는 기술상의 부산물을 포함하여 핵기술의 평화적 응용의 이익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핵무기 보유국이거나 또는 핵무기 비보유국이거나를 불문하고, 본 조약의 모든 당사국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며,

상기 원칙을 촉진함에 있어서 본 조약의 모든 당사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응용을 더욱 개발하기 위한 과학정보의 가능한 한 최대한의 교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국가와 협조하여 동 응용의 개발에 가일층 기여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가능한 한 조속한 일자에 핵무기 경쟁의 중지를 성취하고 또한 핵군비축소의 방향으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의사를 선언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모든 국가의 협조를 촉구하며,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1963년 조약 당사국들이, 핵무기의 모든 실험폭발을 영원히 중단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교섭을 계속하고자 동 조약의 전문에서 표명한 결의를 상기하며,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감시하의 일반적 및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에 따라 핵무기의 제조 중지, 모든 현존 핵무기의 비축 해소 및 국내 병기고로부터의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수단의 제거를 용이하

게 하기 위하여 국제적 긴장완화와 국가간의 신뢰증진을 촉진하기를 희망하며,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제국가는, 그들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여하한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 또는 무력사용을 삼가해야 하며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확립 및 유지에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의 군비목적에의 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핵무기보유 조약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에 대한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수령자에 대하여도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또한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며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핵폭발 장치를 관리하는 것을 여하한 방법으로든 원조, 장려 또는 권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2조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양도자로부터도 양도받지 않을 것과,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획득하지 않을 것과, 또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조를 구하거나 또는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조

①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은 원자력을, 평화적 이용으로부터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이행의 검증을 위한 전속적 목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규정 및 동기구의 안전조치제도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와 교섭하여 체결할 합의사항에 열거된 안전조치를 수락하기로 약속한다. 본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조치의 절차는, 선원물질 또는 특수분열성 물질이 주요원자력 시설내에서 생산처리 또는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그러한 시설외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가를 불문하고, 동물질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본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조치는 전기당사국 영역내에서나 그 관할권하에서나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동 국가의 통제하에 행하여지는 모든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선원물질 또는 특수분열성 물질에 적용되어야 한다.

② 본 조약 당사국은, 선원물질 또는 특수분열성 물질이 본조에 의하여 요구되고 있는 안전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가) 선원물질 또는 특수분열성물질 또는 (나) 특수분열성물질의 처리사용 또는 생산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또는 준비되는 장비 또는 물질을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여하한 핵무기보유

국제에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한다.

③ 본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조치는, 본 조약 제4조에 부응하는 방법으로, 또한 본조의 규정과 본 조약 전문에 규정된 안전조치 적용원칙에 따른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물질의 처리사용 또는 생산을 위한 핵물질과 장비의 국제적 교환을 포함하여 평화적 원자력 활동분야에 있어서의 조약당사국의 경제적 또는 기술적 개발 또는 국제협력에 대한 방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④ 핵무기비보유 조약당사국은 국제원자력기구규정에 따라 본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정을 체결한다. 동 협정의 교섭은 본 조약의 최초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전기의 180일 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동 협정의 교섭이 동 기탁일자 이전에 개시되어야 한다. 동 협정은 교섭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발효하여야 한다.

제4조

①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차별없이 또한 본 조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생산 및 사용을 개발시킬 수 있는 모든 조약당사국의 불가양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조약당사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장비 물질 및 과학기술적 정보의 가능한 한 최대한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로 약속하고, 또한 동 교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상기의 위치에 처해 있는 조약당사국은, 개발도상지역의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특히 핵무기비보유 조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응용을 더욱 개발하는데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기여하도록 협력한다.

제5조

본 조약 당사국은 본 조약에 의거하여 적절한 국제감시하에 또한 적절한 국제적 절차를 통하여 핵폭발의 평화적 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 이익이 무차별의 기초위에 핵무기비보유 조약당사국에 제공되어야 하며, 또한 사용된 폭발장치에 대하여 핵무기비보유 조약당사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가능한 한 저렴할 것과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어떠한 비용도 제외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다. 핵무기비보유 조약당사국은 핵무기비보유국을 적절히 대표하는 적당한 국제기관을 통하여 특별한 국제협정에 따라 그러한 이익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한 교섭은 본 조약이 발효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이 원하는 경우에는 양자협정에 따라 그러한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

제6조

조약당사국은 조속한 일자내의 핵무기 경쟁중지 및 핵군비 축소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에 관한 교섭과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일반적 및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성실히 추구하기로 약속한다.

제7조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의 집단이 각자의 영역내에서 핵무기의 전면적 부존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적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8조

① 조약당사국은 어느 국가나 본 조약에 대한 개정안을 제의할 수 있다. 제의된 개정문안은 기탁국 정부에 제출되며 기탁국 정부는 이를 모든 조약당사국에 배부한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조약당사국의 3분의 1 또는 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기탁국 정부는 동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모든 조약당사국을 초청하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본 조약에 대한 개정안은, 모든 핵무기보유 조약당사국과 동 개정안이 배부된 당시의 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인 조약당사국 전체의 찬성을 포함한 모든 조약당사국의 과반수의 찬성투표로써 승인되어야 한다. 동 개정안은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모든 핵무기 보유 조약당사국과 동 개정안이 배부된 당시의 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인 조약당사국 전체의 비준서를 포함한 모든 조약당사국 과반수의 비준서가 기탁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 이후에는 동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는 일자에 동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③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조약당사국 회의가 본 조약 전문의 목적과 조약규정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증할 목적으로 본 조약의 실시를 검토하기 위하여 서서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그 이후에는 5년마다 조약당사국 과반수가 동일한 취지로 기탁국 정부에 제의함으로써 본 조약의 실시를 검토하기 위해 동일한 목적의 추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① 본 조약은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본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조약의 발효전에 본 조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는 언제든지 본 조약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본 조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 및 가입서는 기탁국 정부로 지정된 미합중국, 영국 및 소련 정부에 기탁된다.

③ 본 조약은 본 조약의 기탁국 정부로 지정된 국가 및 본 조약의 다른 40

개 서명국에 의한 비준과 동 제국에 의한 비준서 기탁일자에 발효한다. 본 조약상 핵무기 보유국이라 함은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고 폭발한 국가를 말한다.

④ 본 조약의 발효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동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자에 발효한다.

⑤ 기탁국 정부는 본 조약에 대한 서명일자,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자, 본 조약의 발효일자 및 회의소집 요청 또는 기타의 통고접수일자를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본 조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등록된다.

제10조

①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전에 모든 조약당사국과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에 행한다. 동 통고에는 동 국가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에 본 조약이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할 것인가 또는 추후의 일정기간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동 결정은 조약당사국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1조

동등히 정본인 영어, 노어, 불어, 서반아어 및 중국어로 된 본 조약은 기탁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본 조약의 인증등본은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서명국과 가입국 정부에 전달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조약에 서명하였다.

1968년 7월 1일 워싱턴, 런던 및 모스크바에서 본 협정문 3부를 작성하였다.

※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 외교정책 > 한반도 > 북한핵문제 > 주요문서

참고 3

워싱턴 선언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2023년 4월 26일에 회동하였다.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공동의 희생 속에서 주도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양국의 외교 역량을 활용한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왔다.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우리의 동맹은 연이은 도전에 맞서서도, 언제나 굳히지 않고 일어섰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였다.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

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건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

※ 출처 : 대통령실 보도자료, ‘워싱턴 선언’, 2023. 4. 27. (경로 : 대한민국 대통령실 홈페이지 > 대통령실 뉴스룸 > 보도자료 > 워싱턴 선언)